

인사규정 개정(안)

현 행	개 정(안)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11. (생략) (신설)	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<u>직급근무년수</u> : 직급당 근무한 기간을 말하고, 회사는 매월 1일 전월 만근한 직원에게 1개월씩 직급근무년수를 부여한다.
제1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 1. ~ 2. (생략) 3. <u>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</u> <u>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u> 4. <u>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</u> 5. (생략) 6. <u>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u> 7. (생략) 8. <u>징집연령 해당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</u> 9. (생략) 10. (생략) (신설) (신설)	제10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</u> <u>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u> 4. <u>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u>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u> 7. (현행과 같음) (삭제) 8. (현행 9호와 같음) 9. (현행 10호와 같음) 10. <u>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</u> 11. <u>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u>

현행	개정(안)
제12조(보직해제)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<u>1</u>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해제를 <u>한다</u>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 ③ <u>제2항에 의하여 대기 발령 중인 자가 제1항에 의한 보직해제 사유가 2개월이 경과하여도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.</u> <u>(신설)</u> <u>(신설)</u>	제12조(보직해제)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<u>어느 하나</u>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해제를 할 수 있다. 다만,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, 감사원 및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직해제 <u>한다</u>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에 따라 보직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업무를 부여한다.</u> ④ <u>보직해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개월마다 해당기간 경과 이전에 보직해제 사유를 재검토하여 보직해제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직해제의 경우는 본 항의 적용을 제외한다.</u> ⑤ <u>제2항에 의하여 대기 발령 중인 자가 제1항에 의한 보직해제 사유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해임 할 수 있다.</u>

현 행	개 정(안)
제17조의2(직급근무년수 산정 제외) ① 휴직 및 보직해제기간은 <u>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호의 해당 직급근무년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</u> 다만, 아래 각 호는 산정 시 포함한다. 1-3. (생략) ②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1회당 다음의 기간을 <u>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호의 해당 직급근무년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</u> 1-3. (생략)	제17조의2(직급근무년수 산정 제외) ① 휴직 및 보직해제기간은 <u>제3조제12호의 직급근무년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</u> 다만, 아래 각 호는 산정 시 포함한다. 1-3. (현행과 같음) ②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1회당 다음의 기간을 <u>제3조제12호의 직급근무년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</u> 1-3. (현행과 같음)
부 칙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제10조(결격사유)는 채용공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한다. 3. (경과조치) 제12조(보직해제)는 보직해제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한다.	